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4. 14 선고 2021나161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4. 14 선고 2021나1612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1050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용, 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언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필

변론종결 2023. 3. 31.

판결선고 2023. 4.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1050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D와 피고 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B는 2015. 12. 1. H로부터 동인 소유의 김포시 E 답 7,024㎡(이후 2020. 2. 10. 및 2020. 4.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30,000,000원을 2015. 12. 2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5.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201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와 더불어 J조합으로부터 26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5. 12. 22.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344,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H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B가 2015. 12. 1. H로부터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30,000,000원은 2015. 12. 22. 피고 B가 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65,000,000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가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일부 잔금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D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D와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승엽, 판사 서여정, 판사 이도식